## 충청북도 교육•학에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

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검 토 보 고 서

## 1．발 의 자 ：교육의원 하재성

## 2．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：2011년 9월 9일
O 회부일자：2011년 9월 15일

## 3．제안이유

O「지방자치법」제 15 조제 1 항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19 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70 분의 1 이하의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의 연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．

O 이에 따라 주민이 충청북도 교육•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．

## 4．주요내용

가．주민이 교육•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는 19 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으로 정함（안 제2조）

## 5．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『지방자치법」제 15 조에서 위임한＂교육•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＂를 청구할 경우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 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．

○ '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'에 관한 규정은 1999. 8. 31.「지방자치법」에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적용하여 오던 중 2006. 5. 24. 법률 제795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, 이에 따라 <붙임 $1>$ 과 같이 전국 시• 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.
$\bigcirc<$ 붙임 $1>$ 의 전국현황과 이미 제정되어 있는 충청북도 조례와의 형평 성을 고려하고,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인 "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"으로 정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,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$\bigcirc$ 안 제2조 후단의 "연서 주민 수에서 1 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 명으로 본다."는 규정은 19 세 이상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를 계산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1 명으로 계산 하도록 하라는 것으로, 이는 조문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수점 이하에 대한 논쟁을 사전에 제거하는 바람직한 규정이라 판단됨.

예시) 충청북도 19세 이상 주민 총수( 2010. 12. 31.기준)
$1,208,325$ 명을 $1 / 100$ 로 나누면 $12,083.25$ 명이고, 소수점 이하는 1 명으로 계산하여 2011년 9월 현재 19세 이상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는 12,084 명임

##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비교표

$\square$ 시도•교육청

| 시•도 | 조 례 | 명 | 서 <br> 주민수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제정일자 |  |  |  |
| 서울 | 서울특별시 교육•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<br>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| $1 / 100$ | 2010.12.30. |
| 전남 | 전라남도 주민의 교육•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 <br> 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| $1 / 100$ | 2011.6.27. |

$\square$ 시•도자치단체

| 시 - 도 | 조 례 명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연 서 } \\ & \text { 주민수 } \\ & \hline \end{aligned}$ | 제정일자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서울 | 서을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| 1/100 | 2006.07.19. |
| 부산 |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• 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| 1/85 | 2000.05.04. |
| 대구 |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| 1/90 | 2006.05.17. |
| 인천 | 인천광역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| 1/85 | 2006.10.16. |
| 광주 |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| 1/85 | 2006.07.15. |
| 대 전 |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| 1/85 | 2006.05.12. |
| 울산 | 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| 1/85 | 2006.10.12. |
| 경기 | 경기도 조례 제•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(2011.04.07.폐지)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| 1/100 | $\begin{aligned} & 2006.04 .03 . \\ & 2011.04 .07 . \end{aligned}$ |
| 강원 |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| 1/100 | 2006. 5.12. |
| 충북 |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| 1/100 | 2006.10.04. |
| 충남 |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| 1/100 | 2007.10.01. |
| 전북 | 전라북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| 1/100 | 2006.07.14. |
| 전남 |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| 1/100 | 2006.08.18. |
| 경북 |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| 1/100 | 2006.05.04. |
| 경남 |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| 1/100 | 2006.08.24. |
| 제주 |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| 1/200 | 2009.07.08. |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지방자치법［시행 2011．1．1］［법률 제10219호，2010．3．31，타법개정］

제 15 조（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）（1） 19 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（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．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＂19세 이상의 주민＂이라 한다）은 시•도와 제 175 조에 따른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 세 이 상 주민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70 분의 1 이하，시•군 및 자치구에서는 19 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 분의 1 이상 20 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（連署）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 을 청구할 수 있다．＜개정 2009．4．1＞

1．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．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
3．「출입국관리법」제 10 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 년이 경과 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둥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